# 2023년도 1학기 한양대 ERICA 외국인 학생 복학 신청 안내



외국인 휴학생 대상 - 23.1.2

## ■ 복학 신청 기간

2023.1.9(월) ~ 2023.1.16(월)

- ① 2월 국제교육원 수료자는 추후 2월초에 복학 안내 예정
- ② 복학 신청은 1.23(월) 일괄 결재 예정 (제출 서류 미비할 경우 결재 지연)
- ③ <u>재휴학 신청자는 HY-In에 복학신청서만 업로드하면 되며, 복학 신청</u> <u>기간 내 결재 예정. 학적이 '재학생'으로 바뀐 뒤 휴학 기간에 직접</u> 휴학 신청 필요
- ④ 표입 발급일: 1.26(목) 이후
- ※ 수강신청: 2023.2.2(목) ~ 2023.2.8(수)

### ■ 주의사항

- 1. HY-in 포탈에 본인의 개인정보(메일 및 전화번호) 미기재 또는 정보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. 이로 인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, 따라서 본인의 포탈 개인정보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학생 본인 상황에 따라, 비자 신청 시에 출입국관리소 또는 대사관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3. 국제처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.

★★현지 대사관의 비자 발급 불허 및 출입국 정책 등의 원인으로 복학 신청 후 발급받은 표준입학허 가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, 반드시 2주이내에 해당 사실을 국제처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★★

### ■ 복학신청대상자 구분

### 1. 신입 복학:

대상: 학교에 신입/편입학 하였으나 한국어능력이 학교 입학 기준에 미달하여 자동 휴학 처리된 학생들 중 한국어 능력이 충족된 학생

#### 복학 한국어조건:

학 부: TOPIK 3급 혹은 한양대 (서울/ERICA) 국제교육원(어학원) 3급 수료증 제출 (택1) 대학원: TOPIK 4급 혹은 한양대 (서울/ERICA) 국제교육원(어학원) 4급 수료증 제출 (택1)

복학 신청 방법: «부록2» 참고



비고: 신입 복학에 해당하는 학생은 <a href="https://naver.me/GkJI7oNP">https://naver.me/GkJI7oNP</a> 링크를 통해 1/9까지 2023년 1학기 기숙사 수요 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2. 신입 휴학기간 1년 만기 복학:

대상: 휴학 1회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. 학교에 신입/편입학 하였으나 한국어능력이 학교 입학 기준에 미달하여 자동 휴학 처리된 학생들 중 휴학 기간이 1년이 된 학생들은 한국어기준이 미충족하여도 반드시 복학신청 후 다시 휴학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 (학부/일반대학원만 해당)

#### 복학 한국어조건:

학 부: TOPIK 3급 혹은 한양대 (서울/ERICA) 국제교육원(어학원) 3급 수료증 제출 (택1) 대학원: TOPIK 4급 혹는 한양대 (서울/ERICA) 국제교육원(어학원) 4급 수료증 제출 (택1)

복학 신청 방법: «부록2» 참고

복학후 재휴학 신청 기간: «부록1» 참고

비고: 휴학기간 1년이 만료된 경우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 제적 처리됨. 반드시 복학 신청하고, 재휴학 신청을 해야 함

### 3. COVID-19 및 일반 복학

대상: 아래 2가지 대상 중 하나에 포함되며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

- 1) 학교에 신입/편입학 하였을 때 한국어성적이 학교 기준에 충족하였으나 COVID19로 인해 휴학한 학생
- 2) 혹은 1학기 이상 학점 취득한 기록이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한 학생

복학 한국어조건: 없음

복학 신청 방법: «부록2» 참고

### 4. COVID-19 및 일반휴학생 중 휴학기간 1년 만기 복학

대상: 휴학 1회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. 아래 2가지 대상에 포함되는 학생들은 계속 휴학을 원할경우 반드시 복학신청 후 다시 휴학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(학부/일반대학원만 해당)

- 1) 학교에 신입/편입학 하였을 때 한국어성적이 학교 기준에 충족하였으나 COVID19로 인해 휴학한 학생
- 2) 혹은 1학기 이상 학점 취득한 기록이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한 학생 중 휴학 신청한 지 1년이 된 학생

복학 한국어조건: 없음

복학 신청 방법: «부록2» 참고

복학후 재휴학 신청 기간: «부록1» 참고

비고: 1년이 만료된 경우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 제적 처리됨. 반드시 다시 복학 신청하고, 재휴학 신청을 해야 함



## 5. 강제유급휴학 기간 만료 복학

대상: 학사경고 3회 연속으로 6개월 동안 강제유급휴학 된 학생들은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함

복학 한국어조건: 없음

비고: 강제유급휴학 6개월 이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됨.

# ■ 등록금 납부 안내

- 1. 등록금 납부 대상자
  - 1) 일반 복학생 중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
  - 2) 강제유급휴학자
- 2. 복학신청 완료 및 비자발급 서류를 발급받아도 재학생 등록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이 됩니다.

# ■ 복학신청 안내

### <대상자 구분>

| 구분          | 참고 문항 |
|-------------|-------|
| 한국 체류 중인 학생 | A항 참조 |
| 해외 체류 중인 학생 | B항 참조 |
| F비자 소지 학생   | C항 참조 |

# A. 한국 체류 중인 학생 [D-2비자 신청대상]

|    | 1. 여권사본   |
|----|---|
|    | 2. 복학신청서  |
| 복학 | 1) HY-in 신청 완료 후 저장되는 복학신청서는 업로드하지 않아도 됩니다.       |
| 신청 | 2) 국제처에서 별첨한 복학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HY-in 첨부파일에 업로드해주세요. |
| 서류 | 3. 보험가입증서 <b>(*D항 참조)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1)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: 보험료 납부 후 보험가입증서 첨부     |
|    | 2)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: 재학생 등록기간에 납부        |



|           | 4. 한국어능력 증명서류(아래 중 반드시 1개 제출, 신입복학 또는 휴학기간 만료 복학         |
|-----------|--|
|           | 신청자만 해당)   |
|           | 1) TOPIK 3급(학부), 4급(대학원)증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2) 한양대어학원 3급(학부), 4급(대학원) 수료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★22.12월 교내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시험 합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           |
|           | ( <mark>국제처에서 합격자 명단 확인 후 복학 승인 예정)</mark>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5. 은행잔고증명 사본(\$20,000 / ₩24,000,000 / RMB140,000         |
|           | 잔여 학기가 1학기인 학생은 \$10,00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*복학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/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만 인정        |
|           | *개강 이후 2주 이내 국제처 사무실 방문하여 원본 제출 필요 – 국제처에서는 미제출로         |
|           | <mark>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</mark>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1. HY-in 복학 신청: https://portal.hanyang.ac.kr/sso/lgin.do |
|           | 2. 신청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복학        | 3. 국제처에서 학생 메일로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업자등록증 발송(1월 26일 이후)           |
| 신청        | * 1, 2번의 신청절차를 모두 완료한 학생에게 해당 서류를 발송합니다                  |
| 방법        | 4. 그 외 필요서류 학생 본인 준비 (아래 준비서류 참조)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5. ERICA 캠퍼스 교내에서 단체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실시 예정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1. 여권 및 여권 사본  |
|           | 2. 외국인등록증(소지자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3. 여권사진 1매(3.5cm x 4.5cm) * <mark>6개월 이내 촬영본</mark>      |
|           | 4. 주소지입증서류(부동산 계약서 또는 기숙사 확인증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D-2비자     | 5. <mark>어학원 재학 또는 수료증명서(신입복학만 해당)</mark>                |
| <u>발급</u> | 6. 통합신청서(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준비</u> | 7. 표 <mark>준입학허가서, 사업자등록증</mark> (국제처에서 메일로 발송 예정)       |
| <u>서류</u> | 8. 결핵진단서(해당국가 학생에 한함) *«부록3» 참고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9. 은행잔고증명원본(\$20,000 / ₩24,000,000 / RMB140,000)         |
|           | *복학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/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만 인정        |
|           | <mark>10. 최종학력증명서(공증본)</mark> *«부록3» 참고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11.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[은행잔고증명원본이 부모님 명의인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제출]         |

# B. 해외 체류 중인 학생 [D-2비자 신청대상]

| 복학 | 1. 여권사본  |
|----|----------|
| 신청 | 2. 복학신청서 |



| 서류           | 1) HY-in 신청 완료 후 저장되는 복학신청서는 업로드하지 않아도 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             | 2) 국제처에서 별첨한 복학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HY-in 첨부파일에 업로드해주세요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3. 보험가입증서 <b>(*D항 참조)</b>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1)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: 보험료 납부 후 보험가입증서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2)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: 재학생 등록기간에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4. 한국어능력 증명서류(아래 중 반드시 1개 제출, 신입복학 또는 휴학기간 만료 복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신청자만 해당)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1) TOPIK 3급(학부), 4급(대학원) 증서<br>2) 한양대어학원 3급(학부), 4급(대학원) 수료증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2) 안장내어익권 3급(익구), 4급(내익권) 구요등<br>★22.12월 교내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시험 합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★22.12월 교내 한국에서임 합격자는 처음 합격 자유을 제울하지 않아도 합니다.<br>(국제처에서 합격자 명단 확인 후 복학 승인 예정)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5. 은행잔고증명 사본(\$20,000 / \#24,000,000 / RMB140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3. 근용전고 3 시즌(\$20,000 / #24,000,000 / KNIB140,000<br>잔여 학기가 1학기인 학생은 \$10,000)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*복학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/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만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*개강 이후 2주 이내 국제처 사무실 방문하여 원본 제출 필요 – 국제처에서는 미제출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1. HY-in 복학 신청: https://portal.hanyang.ac.kr/sso/lgin.do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복학 &         | 2. 신청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저장  |  |  |  |  |  |  |  |
| 비자           | 3. 국제처에서 학생 메일로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업자등록증 발송(1월 26일 이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신청           | *1, 2번의 신청절차를 모두 완료한 학생에게 해당 서류를 발송합니다.  |  |  |  |  |  |  |  |
| 방법           | 4. 그 외 필요서류 학생 본인 준비 (아래 준비서류 참조)  |  |  |  |  |  |  |  |
| 02           | 5. 학생본인 서류 지참하여 해당 영사관 혹은 대사관 방문 문의 후 비자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3. 1822 TH 12 T 18 8 T2 T2 T2 T 2 T 1 T 1 2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<mark>1. 여권 및 여권 사본</mark>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<mark>2. 신분증</mark>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3. 여권사진 1매(3.5cm x 4.5cm) * <b>6개월 이내 촬영본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<u>D-2비자</u> | 4. 신청서(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음),   |  |  |  |  |  |  |  |
| <u>발급</u>    | 5. 표 <mark>준입학허가서, 사업자등록증</mark> (국제처에서 메일로 발송 예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<u>준비</u>    | 6. 결핵진단서(해당국가 학생에 한함) *«부록3» 참고  |  |  |  |  |  |  |  |
| <u>서류</u>    | 7. 은행잔고증명원본(\$20,000 / ₩24,000,000 / RMB140,00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*복학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/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만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8. 최종학력증명서 *«부록3» 참고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9.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[은행잔고증명원본이 부모님 명의인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제출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| 9.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[은행잔고증명원본이 부모님 명의인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제출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



### C. F비자 소지학생 [한국체류 관계 없음]

F비자 소지 학생은 유학비자(D-2비자)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복학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HY-IN에서 복학 신청: <a href="https://portal.hanyang.ac.kr">https://portal.hanyang.ac.kr</a>
- 2) 본인의 "F비자증명(외국인등록증 사본)"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파일에 업로드

### D. 복학생 보험 신청 관련 (D-2비자 발급학생)

외국인 유학생은 보건복지부 법에 따라 반드시 보험에 가입 되어있어야 하며 이번 학기는 현행 규칙에 따라서 유학생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. 이에 복학 신청 시 반드시 보험가입증서를 제출 바랍니다.

- 1. 보험료: 25,000원
- 2. 보험가입 사이트: n.foreignerdb.com/hanyang
- 3. 보험 가입 신청 방법: n.foreignerdb.com/hanyang 접속 → "외국인 유학생 보험 신청" 항목 클릭 → 보험 가입 및 가상계좌로 보험료 납부
- 4. 문의: 보험회사 02-722-3200 또는 국제처 담당자 031-400-0791~0795

### E. 기숙사 신청 관련

기숙사 홈페이지: http://hydorm.hanyang.ac.kr/

복학 승인 후 학적이 '재학생'으로 바뀐 뒤,

학생이 직접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
<u>따라서, 복학 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숙사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숙사 입주가</u> 불가능합니다.

### F. 문의

이 메 일: <u>ericaoia@hanyang.ac.kr</u> 전화번호: +82-31-400-0791~0795



# <부록> 1. 휴학 기간 및 규정

▶ 2023-1 유학생 휴학 신청기간: 2023.1.9(월) ~ 2023.1.16(월)

(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휴학신청기간 다름)

\*\* 휴학 안내는 http://global.hanyang.ac.kr/board\_FOrw70/2562

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▶학부과정

- 1회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가능
- 1년이 만료된 경우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 제적 처리됨. 반드시 다시 복학 신청하고, 재휴학 신청을 해야 함
- 재학기간 중 최대 3년 (횟수로 총 4회)까지 휴학 가능
- 학사경고 3회 연속으로 6개월 동안 강제유급휴학 된 학생은 반드시 복학해야 함

### ▶대학원과정

- \* 일반대학원: 1회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가능
  - 석사/박사과정: 재학기간 중 최대 2년 (횟수로 총 2회)까지 휴학 가능
  - 석박사 학위통합과정: 재학기간 중 최대 3년 (횟수로 총 3회)까지 휴학 가능
- \* 전문/특수대학원: 1회 신청 시 최대 6개월까지 가능
  - 재학기간 중 최대 2년 (횟수로 총 4회)까지 휴학 가능
- \*\* 소속 학과와 최대 휴학가능 기간 반드시 확인 필요



## <부록> 2. 복학신청 방법

1. HY-in 로그인 후 신청 버튼 클릭



### 2. 신청 → 복학신청





## 3. 변동구분 선택 및 증빙파일 업로드→저장 버튼 클릭

| 학번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성명  |                       | 학년/기수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전공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전공(제1전공)   | 소속정보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RC캠퍼스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울  | RC소속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학적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| 휴학생   | 휴대전화번호  |                       | 이메일    |               |
| 망학년 입력시 복학구분이 적용              | 됩니다.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변동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선택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변동사유   |               |
| 복학예정학년                        | 2020 년도   | 1 학년 2  | 학기                    | 결재결과   |               |
| 복학희망학년                        | 2020 년도   | 학년 1  | 학기                    | 무등록여부  |               |
| 복학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V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일자   | 2020년 06월 04일 |
| 군필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대상 🗸 (전역예정자는   | 미필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)  |                       | 성적폐기구분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증   | 빙파일첨부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일이 심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| 파일(PDF, JPG, GIF, PNG 등)만 가능하며, 보<br>P, 본 신청은 반려 또는 승인 지연될 수 있습니<br>파일 심의기준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시기 | ICI.  | <u>파밀업로도</u> 중빙파일삼위기준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nest file (a.g. cropped whate | creenshot image (PDF, JPG, GIF, PNG forma   | ) to prove your valid reason. HTML files are not allowed.<br>delayed or rejected.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
# <부록> 3. 결핵 검사 및 최종학력증명서 관련 참고사항

1. 한국 체류중인 학생 결핵 검사 장소: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

(http://www.ansan.go.kr/snshealth/index.do)

2. 해외 체류 중인 학생 결핵 검사 장소: 해당 국가 공관에 지정병원 문의 후 결핵 진단서 발급 ※결핵 진단서 제출국가

중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몽골, 태국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인도, 미얀마, 네팔, 이란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우크라이나, 나이지리아, 가나, 이집트, 페루 (총 21개국)

- 3. 최종학력증명서 관련 참고사항
  - 1) 아포스티유 (Apostille) 확인을 받은 학위(학력) 등 입증서류



- 2)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
- 3) 중국 국적 학생 최종학력인증
  - 중국 일반계 고교 졸업생: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/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
  - 중국 실업계 고교 졸업생(①, ②중 택1):
  - ① 해당 학교 발행 졸업증명서 (성 교육청 + 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)
  - ② 성 교육청 발행 졸업증명서(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)
- \*\*단,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 (학력)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

단, (장관 고시 국가) 법무부장관 고시 불법체류 다수발생 국가

- 고시 21개국 : 가나, 나이지리아, 네팔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몽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이란, 이집트, 인도, 인도네시아, 중국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태국, 파키스탄, 페루, 필리핀
- 중점 관리대상 5개국 (유학, 어학연수 사증으로 입국 후 난민신청 통로로 편법적으로 악용, 재정능력 입증이 미비한 국가에 대해 지정): 기니, 말리, 에티오피아, 우간다, 카메룬
  - => 본인의 국적이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또는 중점 관리대상 5개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학력증명서 및 은행잔고증명서 면제

끝.